



安企部·國情院 盜聽·不法監聽
關聯 事件 中間搜查結果

2005. 12. 14.

서울中央地方檢察廳

目 次

I. 搜查 經緯	1
1. 수사착수 배경	1
2. 이 사건 수사의 역사적 의의	2
3. 검찰의 기본입장	4
4. 수사진행 경과	5
5. 수사상 애로사항	8
6. 중점 수사 사항	10
II. 安企部 盜聽 事件	11
1. 미림팀의 실체	11
2. 1차 미림팀 (1991. 9.~1992. 12.)	17
3. 2차 미림팀 (1994. 6.~1997. 11.)	20
4. 정치권 등 외부 보고	23
5. 압수된 도청자료 현황 및 도청 실태	26
6. 관련 의혹 사항	31
III. 國情院 · 安企部 不法 電話監聽 事件	35
1. R2 및 CAS 이용 휴대폰 불법감청	35
가. R2 및 CAS 개발·운영 시스템 개요	35
나. R2 및 CAS 이용 휴대폰 불법감청 실태	39

2. 구속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불법감청 책임	43
가. 공통사항	43
나. 원장별 구체적 가담정도	45
3. 유선전화 등 불법감청실태	49
가. 유선전화 불법감청	49
나. 아날로그 휴대폰 불법감청	52
4. 관련 의혹사항	53
가. 통신첩보 활용 여부	53
나. 現 정부에서의 불법 전화 감청 여부	54
다. 전직 국정원 직원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녹음테이프	56
【별첨 1】 R2(휴대폰 유선구간 감청장비) 감청 체계도	
【별첨 2】 CAS(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 감청 체계도	
【별첨 3】 국정원 종합처리팀장이 샘플로 작성한 통신첩보	

IV. 不法盜·監聽資料流出 및 公開 關聯 事件 ----58

1. 도청테이프 등 반출·유포	58
가. 도청테이프 반출	58
나. 삼성 상대 금품요구	59
다. 도청테이프 등 회수·폐기	62
라. MBC 이상호 기자 상대 도청테이프 유출	66
2. 언론사 도청테이프 내용 보도 부분	67
3. 노회찬 의원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 부분	72
4. 한나라당 의원 불법감청 문건 공개 부분	73
5. 관련 의혹 사항	75

V. 'X파일' 內容 關聯 告發 事件79

- 1. 수사 원칙 79
- 2. 관련 고발 사건 현황 83
- 3. 제15대 대선자금 관련 부분 84
 - 가. 한나라당 후보 관련 84
 - 나. 기타 대선 후보 관련 87
- 4. 검사 촌지수수 부분 89
- 5. 전 경제부총리 뇌물수수 부분 91
- 6. 이건희 회장 등 횡령 및 뇌물공여 부분 91

VI. 事件 處理 現況 및 向後 搜查 事項96

- 1. 사건 처리 현황 96
 - 가. 국정원·안기부 도·감청 사건 96
 - 나. 불법 도·감청자료 유출 및 내용 공개 관련 사건 98
 - 다. "X파일" 내용 관련 고발 사건 99
- 2. 향후 수사 사항 100
 - 가. 노회찬 의원 도청테이프 내용공개 관련 100
 - 나. 2002. 한나라당 폭로 도청문건 유출 관련 100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드리는 말씀

-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에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과 언론기관 관계자들 그리고, 본건 수사에 협조해 준 국정원, 통신회사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지난 143일의 수사기간 동안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된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불법도·감청 사건에 대해 실제적 진실을 밝히고,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한다는 각오로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왔음
- 한편, 수사 과정에서는 국가안보와 국익 차원에서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고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 준수에도 만전을 기하였음
- 이 사건 수사결과를 통해 국정원이 그동안 국가에 기여한 수많은 업적 등이 폄하되지 아니하고, 오직 불법도·감청이 사라져 국민들의 사생활이 보호되며,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맑은 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함
- 아울러, 국정원 불법감청 사건 수사진행 도중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한 이수일 前 국정원 차장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I. 搜查 經緯

1. 수사착수 배경

- 2005. 7. 21. 언론에서 문민정부 시절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고 함)가 '미림팀'이라는 도청조직을 운영하며 政·財·言論界 인사들을 도청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MBC에서 입수한 삼성그룹의 '97년 대선자금 지원과 관련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속칭 'X파일'의 존재가 공개됨에 따라 안기부 불법도청 및 'X파일' 내용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음
- 참여연대는 7. 25. 서울중앙지검에 'X파일'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근거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97년 여야 대선후보, 전·현직 검사 등을 고발하였고, 다음날인 7. 26. 전 미림팀장 공운영이 자택에서 자해를 하고, MBC에 도청테이프를 유출한 혐의를 받던 박인희가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 검거 되면서 도청 사건 수사가 본격화 됨
- 검찰은 7. 27. 공운영의 주거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통해 안기부 도청테이프 274개와 녹취보고서 다량을 압수하였고, 이틀 후 도청테이프 압수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으며,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공운영도 검찰 조사에서

미림팀의 도청 전모에 대해 자백함에 따라 안기부 불법도청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되었음

-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함)은 8. 5. 자체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과거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팀 운영 사실을 시인하였고, 더 나아가 2002. 3.경까지 휴대폰을 포함한 불법 전화감청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검찰은 안기부·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행위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여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하게 되었음

2. 이 사건 수사의 역사적 의의

□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도·감청 실태 규명

-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의 도청자료 유출로 인해 촉발된 이 사건 수사를 통해 그동안 수차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정보기관의 조직적 도·감청 행위의 실체가 최초로 밝혀지게 되었음
- 검찰은 미림팀 등에 의해 이루어진 현장 도청행위 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유선전화 및 휴대폰 불법감청 실태까지 명백히 밝힘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도·감청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통해 더 이상 국가정보기관에서 불법도청행위가 이루어 질 수 없도록 확실하게 단절한 역사적 의미가 큼

□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도청불안 해소

- 도청자료 유출·보도로 야기된 '사생활의 비밀'과 '언론자유' 등 헌법적 가치의 상충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과거 성장주의 시대에 국가·집단가치에 가려졌던 '사생활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범국민적으로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음
- 특히 범죄와 무관한 일반국민들이 도청불안으로 인해 여러개의 휴대폰을 구입하는 경제적 비용까지 추가부담하거나 筆談으로 중요 대화를 나누는 등의 불법 도·감청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선진 사회로 발돋움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

□ 국가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 마련

- 음지에서 수집된 불법적 자료를 이용하여 국정운영이나 인사에 이용하던 과거 권위주의시대 유습을 떨치고 국정운영 제반 영역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게 되었음
- 국가기관이 국가이익이나 합목적성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적 기본이념을 각인하게 되었음

-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이 과거의 굴레를 극복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됨

3. 검찰의 기본입장

□ 성역없는 수사로 역사적 사건의 실체진실 규명

- 수사팀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달리 중차대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직시하고, 국가기관의 불법도·감청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한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였으며,
- 이를 위하여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로 수사에 총력을 기울였음

□ 적법절차의 준수 및 인권보장

- 수사과정에 실정법상 제약이 따르는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에 있어 관련 절차를 따랐으며, 조사과정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면서도 피조사자의 인격을 엄격히 존중하였고,

- 피의자 등의 조사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밖에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최대한 보장하여 인권침해 시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였음

□ 법원칙과 정의 관념에 입각한 수사 태도 견지

- 사건을 촉발시킨 ‘X파일’을 비롯한 안기부 불법도청자료를 수사의 단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견해가 대립되었고, 이에 대해 숙고한 결과 법 집행기관인 검찰로서는 불법도청자료 자체를 활용하는 수사는 옳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 이러한 결론은 모든 사건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그 내용이 언론에 이미 공개된 ‘X파일’ 관련 고소·고발사건 수사에 있어서도, ‘X파일’ 내용을 직접적인 수사의 단서나 증거로 사용하지 않고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해 실체를 규명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였음

4. 수사진행 경과

□ 특별수사팀 구성

- 2차장검사 총괄 지휘, 부장검사 2명, 검사 13명, 수사관 27명, 대검 전산팀 등 수사지원팀 20명 투입 (총 62명)

- 수사의 효율성과 수사성과를 위해 공안부, 특수부, 외사부 등 유관부서의 우수 인력 투입
- 검찰은 7. 26. 참여연대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하고, 공안2부장을 팀장으로 공안2부 검사 4명, 공안1부 검사 1명, 특수부 검사 2명 및 수사관 15명으로 전담수사팀 구성
- 8. 5. 국정원이 불법 감청사실을 발표함에 따라 8. 8.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특수부 검사 3명, 공안1부 검사 2명, 외사부 검사 1명 및 수사관 12명을 보강하고, 대검 전산팀 등 수사요원 20명을 지원받아 수사팀 확대

□ 국정원 등 25개소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물 확보

- 안기부 불법도청 수사와 관련, 7. 27. 수사착수와 동시에 공운영 주거지·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안기부 도청테이프 원본 274개 및 녹취보고서 13권을 압수하였고,
 - 그밖에 박인회의 본가 등 7개소를 압수수색하여 'X파일' 관련 테이프 및 녹취보고서 복사본 회수
- 국정원 불법 전화감청 수사와 관련, 8. 19. 국정원 본부에 대하여 부장검사 1명, 검사 7명을 비롯하여 총 32명이 참여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국정원 불법 전화감청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자료를 입수하였고,

- 감청장비 운용자료, 국정원 내부보고서 등 증거서류, 컴퓨터, 감청장비 등 총 10박스 분량을 압수
- 기타 전화국 7개소 및 국정원 전직 직원 8명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여 불법 전화감청테이프 1개 및 감청 관련 자료 압수

□ 사건 관련자 연인원 460여명 소환조사

- 7. 27. 피의자 박인회를 긴급체포하여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기간 143일 동안 연인원 460여명을 조사
 - 전직 안기부장·국정원장 5명, 전·현직 국정원직원 132명 포함
 - ※ 국정원으로부터 전·현직 국정원직원 36명 등 총 40명의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에 활용

□ 출국금지

- 7. 28. 천용택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6명을 출국금지한 것을 비롯하여, 수사기간 중 총 30명을 출국금지하였고, 장기간 국외 체류중이던 홍석현 전 주미대사에 대하여는 '입국시 통보 및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전직 안기부장·국정원장 4명 포함

5. 수사상 에로사항

□ 불법 도·감청 수사와 관련하여

- 불법 도·감청 수사는 수년 전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로 물적증거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많았고, 특히, 보안의식이 투철한 전·현직 국가정보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여서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
- 안기부 도청 수사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생각에 안기부장 등 고위급일수록 수사 초기에는 자신의 가담사실을 철저하게 부인하였음
- 국정원 불법 전화감청 수사의 경우 이를 인정하는 국정원의 개괄적 발표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에 착수하였고, 관련 자료들이 수년전에 대부분 폐기되어 결정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실제 규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음
- 또한, 안기부·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이익을 위하여 국정원의 위상과

본질적 기능이 가급적 훼손되지 않도록 수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음

- 특히, 전직 국정원장 2명의 구속과 관련하여, 과거 고백의 결단을 내린 現 국정원에 부담을 주게 되는 점, 국정원 직원들의 임무수행과 사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공소시효가 지난 사람들과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할 수밖에 없었음

□ 'X파일' 관련 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 'X파일' 관련 고발사건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권과 재계·언론계의 유착의혹이 문제된 중요사안이었고, 특히 검사의 '촌지수수' 의혹이 제기되어 검찰로서는 자기 감찰을 더욱 엄정히 한다는 각오로 이를 철저히 규명한다는 입장 하에 수사에 임하였음
- 그러나 그 내용이 이미 8년이 경과한 오래 전의 일로서 공소시효가 도과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주요 참고인이 사망하였거나, 물적 증거 역시 이미 폐기되었거나 법정 보존기간 경과로 사실상 입수가 곤란하여 당사자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내용 자체를 부인할 경우 이를 탄핵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마땅히 없었으며,

- 또한, '적법절차' 원칙 하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결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X파일'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어렵고,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등 수사방법상의 제약도 있었음

6. 중점 수사 사항

- 과거 안기부·국정원의 불법 도·감청의 방법, 규모, 대상 등 실태
- 불법 도·감청자료 유출 및 내용 공개와 관련한 공갈 등 범행, 'X파일' 등 불법 도·감청자료를 폭로한 언론사, 정치인의 실정법 위반 부분, 정치권 유출 여부
- 'X파일 내용 수사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등의 고발사건 수사

II. 安企部 盜聽 事件

1. 미림팀의 실체

□ 편성 및 유래

- 미림팀은 '60년대 중반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동향파악을 위해 국내정보수집 담당부서 산하에 운영하던 정보수집팀의 별칭으로,
 - '미림(美林)' 이라는 팀명은 고급 술집의 마담 등을 협조자(속칭 '망원')로 활용하여 정보수집을 해 왔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고, 내부적으로는 '여론조사팀' 등의 공식명칭을 사용하였으며,
 - 서울시내 고급 술집이나 음식점의 마담과 종업원을 망원으로 활용하여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출입상황이나 동향첩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하였고,
 - 초기에는 도청장비는 사용하지 않고, 망원들의 득문첩보와 풍문 등을 근거로 동향첩보를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수준으로, 수집된 첩보의 질이 낮았고, 활동도 미약하였음
- 과거 득문첩보를 위주로 정치인 등 주요인사의 동향첩보를 수집하던 미림팀은 6공화국 말기와 문민정부 시절 2차례에

걸쳐 공운영을 팀장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장비를 이용한 도청방식에 의해 첩보수집을 하였는데,

- 6공화국 말기인 1991. 9.경(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이전) 당시 국내정보수집 담당 태○○ 국장은 정보수집의 과학화라는 명분으로 공운영을 팀장으로 임명하여 기존의 미림팀을 재편하고, 도청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해 오다가, 제14대 대선 직전인 1992. 12.경 활동을 중단하였고,
- 문민정부 시절인 1994. 6.경(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이후) 당시 국내정보수집 담당 오○○ 국장은 부임 이후 정보수집 실적 제고 방안으로 도청방식의 미림팀 활동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과거 미림팀장으로 활동하던 공운영을 다시 팀장으로 영입하여 도청을 통한 정보수집 방식으로 운영해 오다가, 제15대 대선직전인 1997. 11.경 활동을 중단하였음
- 공운영이 2차례에 걸쳐 미림팀장으로 활동한 기간을 제외 하고는 미림팀에서 도청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편의상 공운영의 활동 기간을 기준으로 1차 미림팀(1991. 9.~1992. 12.), 2차 미림팀(1994. 6.~1997. 11.)으로 구분

※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1993. 12. 27. 이전의 1차 미림팀 활동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음

□ 도청 방법

- 미림팀은 서울시내 유명 한정식집 지배인이나 종업원 등을 망원으로 확보하고, 망원들의 도움으로 주요 인사들이 예약한 방에 도청기를 설치하여 대화내용을 통상 2~3시간 가량 녹음한 후 안가 등에서 도청내용을 녹취하는 방법으로 활동
- 망원 확보
 -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이 출입하는 서울 시내 유명 한정식 집이나 호텔 음식점을 파악하고, 업소 내에서 손님 예약상황이나 내부동향을 잘 알 수 있는 지배인, 마담 등을 망원 선정 대상으로 정한 후,
 - 망원 선정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재산관계,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적당한 접근방법을 찾아낸 후 손님을 가장하여 수시로 출입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개인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어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망원으로 확보하였고,
※ 예컨대, 민형사상 문제, 취직문제 등을 해결해 주고,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방법 등 사용
 - 망원으로 선정한 후에는 비밀누설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각서를 작성케 하는 등 보안교육을 시킨 후 처음에는 일반 녹음기를 은닉하여 녹음해 오도록 훈련을 시키고, 이후 망원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도청기 송신기 설치 방법을 교육함

- 망원은 10명에서 최대 25명까지 관리하였고, 매월 상부로부터 월 1,000만원 가량의 “특수망비”를 받아 망원들의 도청 실적에 따라 1인당 20만원~70만원을 활동비로 지급하여 관리함

※ A급 망원의 경우에는 도청 송신기뿐만 아니라 수신기까지 조작할 수 있고, 실적에 따라 망비를 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도청을 해오는 경우도 있었음

○ 도청대상자 선정

- 망원들로부터 예약 상황을 보고받고 미림팀이 자체적으로 도청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와 과학보안국에서 이첩된 불법 전화감청 자료에 의해 도청대상자를 선정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었음
- 과학보안국이 전화 감청을 통해 도청대상자의 명단, 회합 장소 등을 수집하여 4국장에게 서면 또는 내부통신망을 통해 알려주면 국장·과장이 공운영에게 도청지시를 하였고, 예외적으로 차장이 직접 도청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음
- 주요 도청 대상자는 여야 중요정치인, 각 언론사 사주 등 언론인,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 보안사령관, 참모총장 등이었고, 당시 대통령 아들도 주요 도청대상자였음

○ 도청기 설치 및 도청

- 도청기는 송신기와 수신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망원이나 팀원이 송신기를 도청 장소에 설치한 후 팀원들은 도청장소 주변에 수신 감도가 좋은 위치를 찾아 다방이나 승용차 안에서 수신을 하여 녹음하고, 도청 종료 후 송신기를 회수함
- 송신기는 음식점 내 식기 장식장, 에어컨 내부, 가구 서랍, 소파 밑 등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설치하는데, 예약된 시간 약 2시간 전에 송신기를 설치하고 전원을 켜 놓은 후 팀원들은 예약시간 전까지 수신 감도가 좋은 위치를 찾기 위해 승용차를 이동시키며 도청 준비를 함
- 망원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의 경우 망원이 송신기를 설치 하지만, 망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도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미림팀원이 직접 송신기를 설치한 후 도청장소 밖에서 도청을 하며, 송신기는 당일 또는 다음날 회수함
- 도청 장소는 서울시내 주요 호텔의 일식·중식당, 인사동·사직동·여의도의 유명 한정식집, 서울 근교의 골프장 등이었으며, 골프장의 경우 골프백 안에 송신기를 넣고 도청을 하였고, 도청 장소가 안가인 P호텔 주변의 경우에는 안가 내에서도 수신이 가능하였음

- 도청이 종료되면 팀원 1명은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안가로 가서 테이프를 공운영에게 전달하고, 다른 팀원은 현장에서 송신기를 회수하며, 공운영은 안가에서 다음날 새벽까지 녹음테이프를 청취하여 녹취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팀원 중 1명이 사무실에서 타자·컴퓨터로 정식 보고서를 완성

※ 보고서는 통상 10매 내외로, 첫 페이지 상단에 제목, 그 밑에 일시·접촉자·대화내용 개요를 기재한 후, 그 이하에 구체적인 내용을 대화체 형식으로 기재

□ 보고 계통

-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보고체계에 따라 공운영 팀장이 지역 과장에게 보고하면, 과장은 부국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를 하고, 국장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배포선을 정하면 배포선 수에 따라 보고서를 만들어 봉투에 넣고 밀봉한 후 “M보고”라고 기재하여 부장 비서실, 국내담당 차장 보좌관실 등에 배포하였는데,
- 국장과 차장이 변동되면서 미림팀 보고서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통상적인 보고체계에 따르지 말고 자신에게 직보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시기에 따라 보고체계는 일정치 않았으나, 어떤 형태로건 부장이나 차장에게 미림팀 수집 정보가 보고된 사실은 인정되고, 특정 시기에는 외부 인사에게 미림팀 보고서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되었음

2. 1차 미림팀 (1991. 9. ~ 1992. 12.)

□ 편성

- 1991. 9.경 서동권 안기부장이 부장주재 회의에서 '정보의 질이 낮다'고 지적하고, 김영수 국내담당 차장이 '정보수집의 과학화'를 지시함에 따라,
 - 태○○ 4국장은 황○○ 1국장, 여○○ 5국장과 함께 대책을 숙의한 결과 4국 산하 지역과에 있던 기존의 미림팀(공식명칭 '여론조사팀')을 과학화하고, 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 당시 5국 산하 노동과에서 근무하던 공운영이 평소 정보수집 능력이 있다는 여○○ 5국장의 추천에 따라 공운영을 팀장으로 임명하여 1차 미림팀 편성
- 태○○ 국장은 공운영에게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통신 장비를 활용한 고급정보 수집활동을 위해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운영에게 팀원 선발 재량을 주었고,
 - 공운영은 안기부내 통신직 중 통신지식이 해박한 것으로 알려진 김○○ 사무관 등 3명을 선발하고, 기존의 미림팀원 2명을 포함하여 팀원 5명으로 1차 미림팀을 편성함

□ 활동

- 태○○ 4국장이 미림팀 편성 후 과학장비를 활용하여 주요 인사들의 대화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 남산 안기부 별관에 미림팀 사무실을 마련하고, 보안을 위해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를 보관할 이중 캐비닛을 구비하고, 시내 P호텔 객실 1개를 안가로 확보하는 등 기본적인 물적 설비를 마련하고,
 - 안기부 산하 통신장비기술연구단으로부터 도청 송·수신기 등을 지원받고, 정보학교 통신교관으로부터 도청교육을 받은 후 사무실과 현장에서 약 1개월간 실습을 통해 도청장비 사용 방법을 습득하였으며,
 - ※ 초기 장비 확보 내역 : 송·수신기(CN-400) 5세트, 미국산 송·수신기 2세트, 소형녹음기 10대, 중형녹음기 1대 (송신기는 가로 3~4cm, 세로 6~7cm, 두께 1.5cm 가량)
 - ※ 실습하는 과정에서는 교육과정과 달리 80~90%정도 도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콘크리트, 진흙 벽, 건물내 철근, 고무판 등이 설치된 곳은 전파가 방해되어 송수신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발견하여 그 이후에는 도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짐
 - 기존의 미림팀으로부터 망원 포섭이나 관리 방법에 대해 인계받지 못하여 새로이 망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망원을 최대 25명까지 확보함

- 1차 미림팀 편성 초기에는 장비사용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반복적인 실습을 통해 1991. 12.경부터는 정상적인 도청이 이루어졌으나, 도청 과정에서 발각되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 보고 계통

- 편성 초기에는 통상적인 보고체계에 따라 과장, 부국장을 거쳐 미림팀 보고서를 보고 받은 태○○ 국장이 배포선을 정하여 부장 비서실, 국내담당 차장 보좌관실에 미림팀 보고서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부장, 차장에게 보고하였고,
- 1992. 초부터는 태○○ 국장이 공운영 팀장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직접 보고받아 부장, 차장에게 보고함

□ 해체

- 1992. 12.경 태○○ 국장은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이 터지는 등 선거정국에서 사고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지역과장에게 활동 중단을 지시하여 미림팀 활동을 중단하였고,
- 대선 종료후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중이던 테이프 40~50개를 소각 처리하였으며,

※ 공운영은 팀원들과 함께 소각장에서 테이프 내용물을 뽑아내어 직접 소각하였는데, 당시 소각한 테이프에도 중요한 정치정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팀원들 중 소각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진술

- 1993. 7.경 조직 개편과 동시에 1차 미림팀이 공식적으로 해체되었고, 공운영을 비롯한 팀원은 모두 일반 부서의 내근요원으로 전보됨

※ 공운영은 경제과로 전출되면서 사무관으로 강등

3. 2차 미림팀 (1994. 6. ~ 1997. 11.)

□ 편성

○ 1994. 2.경 부임한 오○○ 4국장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보수집 실적이 저조하여 정보수집 강화방안을 강구하다가 1994. 6.경 미림팀을 주도적으로 재구성 하였고, 당시 김덕 부장과 황창평 차장도 미림팀 재구성에 관여하였거나, 최소한 미림팀 재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오○○ 국장은 미림팀이 공식 조직이고, 기획조정실장이 담당하는 예산을 받는 부서이며, 직원의 이동 및 편제는 국장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림팀 재구성에 대해 부장 이하 간부들이 공식적으로 결정하거나 최소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술

○ 오○○ 국장은 과거 미림팀장이었던 공운영에게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줄테니 과거 미림팀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미림팀을 재구성하여 획기적으로 활동하라”고 지시하였으며,

- 이에 따라 공운영은 팀원 구성의 전권을 위임받고 평소 신뢰하던 팀원 2명을 선발하여 팀장 포함 총 3명으로 2차 미림팀을 편성하고 1994. 7.경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

□ 활동

○ 2차 미림팀 편성 후 1차 미림팀에서 사용하다가 부국장실에 보관 중이던 감청장비 4~5개와 녹음기 4~5개 등 도청장비를 구비하고, 1차 미림팀 활동을 통해 습득한 장비조작 기술과 망원조직 활용 방법 등을 새로운 팀원들에게 1~2개월간 교육한 후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도청활동을 하였는데,

- 망원 활동의 정착으로 망원정보에 의한 자체 도청대상자 선정 비율이 80%에 이르렀고, 나머지는 종전과 같이 상부 지시에 따라 도청을 하였으며,

- 도청대상자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관계, 재계, 학계, 종교계 인사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고, 1997년 대선전에는 여당 내부의 동향이나,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 측근 인사들의 동향이 주된 내용이었음

- 2차 미림팀 활동 기간(3년 5개월) 동안 생산된 도청테이프는 하루 1개, 1주일에 5개 정도로 도합 1,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 생산된 도청테이프 중 중요 테이프는 일시·장소·대화자가 명기된 라벨을 붙여 사무실내 이중 캐비닛에 보관하였고, 녹음상태가 불량하거나 정보가치가 적은 테이프는 사무실 일반 캐비닛에 보관하다가 6개월마다 소각하였음

□ 보고 계통

- 김덕 전 안기부장, 황창평 전 차장 등은 미림팀 보고서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미림팀 보고서를 보고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직원들도 상부 보고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시기에 따라 보고 방식은 일정치 않으나 어떠한 형태로건 미림팀 보고서가 부장, 차장에게 보고된 사실은 인정됨
- 오정소 전 차장은 국장·차장 시절에 공운영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직접 보고 받아 상부에 보고하였고,
- 오정소 차장 퇴임 이후에는 통상적인 보고체계에 따라 공운영 팀장이 전○○ 지역과장에게 보고하면, 과장은 부국장을 거쳐 임○○ 국장에게 보고를 하고, 국장이 배포선을 정해 주면 그에 따라 부장 비서실, 차장 보좌관실 등에 배포하였음

□ 해체

- 1997. 11.경 대선 전에 전○○ 과장이 임○○ 국장에게 미림팀 활동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활동 중단을 건의하여 국장이 활동 중단을 지시함에 따라 미림팀 활동이 중단되었고,
 - 공운영을 비롯한 미림팀원들은 지역과 소속 지역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1998. 4.경 공운영은 대기발령 되고, 나머지 팀원들은 타부서로 전출되어 공식적으로 해체됨
- 1997. 11. 미림팀 활동 중단 지시 이후 미림팀이 직접 도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망원들이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도청기를 이용하여 1998. 2.경까지 도청을 하였고, 추후에 공운영이 망원들로부터 도청테이프를 수거한 사실이 있음
 - ※ 압수된 도청테이프는 1998. 2.경까지 존재하나, 보고서철에는 1997. 11. 초순까지의 녹취보고서만 존재

4. 정치권 등 외부 보고

□ 외부 보고 여부

- 미림팀 보고서가 당시 대통령 차남 김현철과 이원종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있어 수사한 결과,

- 김현철씨는 김기섭 운영차장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받은 정황이 확인되고, 오정소 국내담당 차장으로부터도 구두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 이원종 정무수석은 오정소 차장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비롯한 안기부 문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됨
- 김현철씨는 김기섭 운영차장이나 오정소 차장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보고 받거나 그 내용을 구두로 보고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 김현철씨의 자문 역할을 하던 김○○은 김현철과 김기섭을 자주 접하면서 김기섭 차장이 김현철씨에게 정치인들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
 - 이원종 수석은 김현철씨가 자신보다 먼저 정국 상황을 파악하는 일이 있고, 김현철씨가 자신에게 정치인들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보내 준 일이 있다고 진술
 - 오정소 차장은 미림팀 보고서를 김현철씨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은 없지만 자신이 미림팀을 관장하는 동안 녹취보고서를 토대로 필요한 내용을 몇차례 구두로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
 - 박일룡 국내담당 차장은 이원종수석이 자신에게 “김현철에게 가는 정보를 보면 안기부 감청정보가 있는데 자기한테는 오지 않아 섭섭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

- 이원종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정소 차장으로부터 미림팀 보고서를 받았고, 오정소 차장 퇴임 후에는 임○○ 2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음
- 한편, 미림팀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었는지에 대하여 당시 안기부장 등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직접 전달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으며, 다만, 안기부장의 주례보고서 내용에 미림팀 수집 첩보가 포함되어 보고되는 경우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도청자료 이용 정황

- 김현철씨와 이원종 수석은 미림팀 도청자료를 통해 지득한 정보를 가지고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미림팀 도청자료를 이용한 정황이 확인됨
 - 이원종 수석은 1996. 12. 이회창 총재 지지세력 확충을 위한 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한 미림팀 보고서를 오정소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백○○ 의원에게 전화로 “벌써 움직이면 어떻게 하나”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 서○○ 전의원은 1996. 12. 위 이회창 총재 지지 모임을 가진 후 다음번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이원종과 김현철로부터 은근히 나무라는 전화가 왔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도청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

5. 압수된 도청자료 현황 및 도청 실태

□ 압수된 도청자료 현황

- 검찰은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통하여 120분용 녹음테이프 274개와 총13권의 녹취 보고서철 3,766면 분량 등을 압수하였는바, 그 분석결과 위 압수자료는 총 554회 도청행위에 대한 도청자료로 확인되었음
- 압수된 녹음테이프 274개는 총 220회에 걸쳐 타인간의 공개 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 도청행위를 한 미림팀원들이 테이프 표면에 녹음일시, 장소, 주요 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두었음
 - 1회 도청시 테이프 1개를 사용한 것이 169회, 테이프 2개를 사용한 것은 49회, 3개의 테이프를 사용한 것은 1회, 4개를 사용한 것은 1회임
 - 압수된 녹음테이프는 공운영의 판단에 따라 녹취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거나,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녹음테이프만 보관한 경우가 있었는데, 압수물 중 녹음 테이프만 있고 이에 상응한 녹취보고서가 없는 도청행위는 총 71회임

○ 압수된 녹취보고서철은 총 13권으로

- 그 중 5권은 공운영이 보고 후 보관하던 보고서철 원본이며, 나머지는 복사본으로, 원본과 사본이 혼재되어 있었음

- 총 3,766 면 중 중복되지 아니한 보고서는 총 489종으로 그 중 1회 도청행위에 대하여 중복 보고한 6건을 제외하면 총 483회 도청행위에 대한 자료임

○ 결국, 압수물을 통하여 증거자료가 확보된 도청행위는 총 554회임 (녹취보고서 483회, 녹취보고서가 없는 도청테이프 71회를 합한 수치)

※ 공운영은 2차 미림팀이 약 1,000여회 가량 도청을 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압수한 도청자료는 전체 도청회수의 약 55% 가량이고, 그 이외의 테이프와 녹취자료는 미림팀 운영 당시나 해체시 파기하여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공운영의 주거지에서 300매 분량의 “주요인물 접촉 동향” 보고서철 1권을 압수하였음

- 공운영이 팀장이 된 이후에도, 과거 득문첩보 방식의 미림팀 활동이 일정 부분 계속되어, 시내 유명 한정식집의 망원들로부터 중요인사들의 오찬·만찬시 참석자 명단과 회합시 특이 사항 등을 득문하여 이를 메모 형식으로 작성한 후, 미림팀 도청 녹취보고서 보고서 참고용으로 첨부하여 보고한 자료로,

- 1994. 7.경부터 1997. 9.경까지 총 1,170회의 회합 내용을 접촉 인물, 일시, 장소, 비고 등으로 작성한 것으로, 연인원 (중복 포함) 5,400여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음

□ 압수물을 통해 확인된 도청행위 실태

【도청기간】

- 공운영의 진술, 압수된 도청테이프 외관, 녹취보고서, 공운영이 작성한 도청자료 목록 등을 분석한 결과
 - 압수된 도청테이프 및 녹취보고서는 1994. 7. 9.경부터 1998. 2. 26.경까지 이루어진 도청행위에 대한 압수물로서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이른 바 2차 미림팀 활동 기간 중 이루어진 도청행위의 결과물로 확인되었음
 - 1997. 12.경 이후에는 미림팀이 활동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운영 등의 주장에 반하여, 1997. 12. 이후에도 1998. 2. 26.까지 도청된 테이프도 다수 발견되었으나, 이는 숙달된 망원들이 임의로 도청행위를 한 후 공운영에게 그 테이프 등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 작성일자가 '97.12. 이후인 녹취보고서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97.11.경 공식적인 활동을 중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 압수물에 의해 확인된 도청 횡수를 연도별로 분류하면 '94년도 94회, '95년도 159회, '96년도 105회, '97년도 170회, '98년도 18회 등이며, 8회는 구체적 도청일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였음

【도청장소】

- 도청행위는 주로 망원이 활동하던 유명 호텔의 식당 객실이나 한정식집 등에서 저녁식사 시간에 이루어졌음
 - 구체적으로는 시내 특급호텔 식당에서 이루어진 것이 129회, 기타 유명 고급 식당에서 이루어진 것이 10회이고,
 - 여의도, 사직동, 인사동 등의 한정식집에서 이루어진 것이 400회이며, 그 이외 식당에서 이루어진 것이 15회임

【도청대상자】

- 정당대표, 전현직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 국무총리·장관·청와대비서실장·청와대수석비서관·경찰청장 등 고위 공무원, 신문·방송사 등 언론계 중요간부, 법조계 인사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상대로 도청행위가 이루어졌음
- 도청이 이루어진 장소에 참석한 인사 중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한 인사들을 직업군별로 분류하면, 정치인 273명, 고위 공무원 84명, 언론계 75명, 재계 57명, 법조계 27명, 학계 26명, 기타 104명 등 총 646명임

※ 대상자 중 정치인, 교수, 고위 공직을 거치는 등 신분의 변동으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체적인 분류 자료임

【도청내용】

- 대통령선거동향 및 대책 등에 관련된 내용(106건), 정당활동 및 개인의 정치적 소신 관련된 내용(206건) 등 정치권의 동향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외에 인사·민원 관련 45건, 개인 사생활 관련내용 41건, 정부정책현안 관련 16건, 기타 140건 등임
- 주요 사안별 도청내용을 보면,
 - '94년 당시 야권통합 움직임 등과 관련하여 민주당, 신민당, 새한국당 등 야권동향 (22건)
 - '95년 모 정당 대표의 민자당 탈당 등과 관련된 동향 (13건)
 - '95년 지방자치제 선거와 관련한 각 당 자치단체장 후보 등의 동향(19건)
 - '95년 국민회의 창당 과정에서의 야권 동향(8건)
 -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동향 (10건)
 - 12·12, 5·18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과 관련된 동향(17건)
 - 15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여·야당 대통령후보군과 각 후보 진영 주요 인사들의 동향(106건) 등임

□ 도청데이프 274개 등 압수물 처리 계획

- 이 사건 압수물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의한 통상적인 압수물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6. 관련 의혹 사항

□ 문민정부, 안기부 타부서 불법도청 의혹

○ 의혹 요지

- 안기부 일부 부서 직원들이 미림팀 망원이 있는 업소에 도청 장비를 설치한 것을 망원이 발견하였고, 한정식집 주위에서 직원들이 도청 하는 것이 목격 되는 등 미림팀 이외의 타부서에서 도청을 하였다는 의혹

○ 수사 결과

- 관련자 진술에 의해 문민정부 시절 미림팀 이외의 일부 타부서에서도 미림팀 방식의 불법 도청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됨
- 그러나, 수사한 결과 도청 전담 조직에 의한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합법 활동 부서 직원들의 일부 일탈행위로 파악되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